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09
----------	------

제출일자 : 2022. 12.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기존 확성기 방식의 마을방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행정정보 전달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정의 명시 (안 제2조제4호)
- 나.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설치 및 운용에 드는 비용 지원 명시 (안 제4조제1항)
- 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지원절차 규정 (안 제5조제4항)
- 라.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관리·운용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 붙임)
-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2. 10. 20. ~ 11. 9.)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관리·운영자”를 “관리·운용자”로 하고, “관리·운영하는”을 “관리·운용하는”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마을 주민이 소유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를 “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마을의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를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제외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의”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관리·운영자의 지정 등)”을 “(관리·운용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운영자”를 각각 “관리·운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운영하여야”를 “관리·운용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운영비용의 부담)”을 “(관리·운용 비용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운영비용은”을 “관리·운용 비용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은 달성군이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략) 3. “ <u>관리·운영자</u> ”란 마을방송시스템을 <u>관리·운영</u>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신설>	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 <u>관리·운용자</u> ” ----- ---- <u>관리·운용</u> ----- 4. “ <u>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u> ”이란 <u>원격방송을 통해 마을 주민이 소유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u>
제4조(지원기준 등)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u>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② <u>전항의</u>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4. (생략)	제4조(지원기준 등) ① ----- ----- ----- ----- ----- ----- ----- 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마을의 <u>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u> ----- -----. ② <u>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제외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의</u> -----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6조(관리·운영자의 지정 등)

① 관할 읍·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

②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비용의 부담)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은 해당 마을회가 부담한다.

<단서 신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자의 지정 등)

① -----
-- 관리·운영자-----

② ----- 관리·운영자

----- 관리·
운영자-----
----- 관리·운영자-----

③ -----관리·운
용자-----
-----관리·
운영-----

제7조(관리·운영 비용의 부담)

-----관리·운영 비용
-----다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 비용은
달성군이 부담한다.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 재난안전법)**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1. 사업개요

기존 확성기 방식의 마을방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행정정보 전달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재난상황과 각종 행정정보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인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됨

3. 관련 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4조제1항,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스마트마을방송 장비 임차료 : 사무관리비 연 60,000천원
- 통신 요금 : 공공운영비 연 27,000천원

나. 추계 결과 : 435,000천원 정도 / 5차년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방식의 구축·운영비용은 5차 년도까지 총 435,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435,000천원 정도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통신팀장 오종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 입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지 방 세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의존재원		-	-	-	-	-	-
세 출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재원 조달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지방세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군 비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435,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